

대전지방법원 2019. 12. 18 선고 2019가단102014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

담당변호사 윤현진

피고 1. 주식회사 A

2. B

3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문상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서정환

변론 종결 2019. 11. 20.

판결 선고 2019. 12. 18.

주 문

1. 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475,087원과 그중 99,375,738원에 대하여 2018. 12. 28.부터 2019. 3. 31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. 9. 18.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.
3. 피고 C은,
가. 원고에게 15,625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나.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25,000,000원 부분에 관한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, 소외 D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

1)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(이하 '피고 회사'라고 한다)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제1 신용보증약정	대출보증	2015. 4. 29.	2022. 4. 28.	261,000,000원
제2 신용보증약정		2018. 4. 24.	2019. 4. 23.	80,000,000원
합계		341,000,000원		

2) 원고는 2015. 4. 29.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E(이하 '소외 은행'이라고 한다)에 보증금액 2억 6,100만 원, 보증기한 2022. 4. 28.로 하는 신용보증서(이하 '이 사건 제1 신용보증서'라고 한다)를 발급하고, 2018. 4. 24.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보증금액 8,000만 원, 보증기한 2019. 4. 23.으로 하는 신용보증서(이하 '이 사건 제2

신용보증서'라고 한다)를 발급하였다.

3)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제1, 2 신용보증서 발급 무렵 이 사건 제1, 2 신용보증서를 소외 은행에 각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2억 9,000만 원 및 1억 원 상당의 각 일반자금대출을 실행받았다.

나.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

1)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2018. 10. 8. 신용보증사고가 발행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8. 12. 28. 소외 은행에 99,375,738을 대위변제하였다.

2) 한편,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, 그에 의한 지연지연손해율은 2019. 3. 31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는 연 8%로 각 정해져 있다. 또한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2항에서, 위 피고들이 원고가 대신 지급한 채권의 집행보전(해지 포함),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,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비용으로 1,099,349원이 발생하였다.

다. 피고 B과 D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

1) 피고 B은 2018. 5. 9. D과 사이에 서귀포시 F 대 453.2㎡ 및 G 임야 112.3㎡와 위 각 토지 지상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5,000만 원(계약금 1억 5,000만 원, 중도금 8,500만 원, 잔금 3억 5,000만 원)으로 하되, 위 매매대금 중 1억 5,000만 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7. 매매금액 6억 5천만 원 중 1억 천만 원은 잔금 및 등기이전 후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되 아래

①②의 방법 중 택일하는 것으로 하고 ②항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안전을 위하여 매수인이 대출실행 후 후순위로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.

① 매매목적물의 2층을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전세를 하고, 매도인에게 1억 5천만

원을 즉시 상환하며, 매도인은 5일 이내에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다.

② 4년간 (원금+이자)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. 이에 대한 이자지급의 계산은 H조합 대출이자(연 4.0%~4.9%)에 준하며, 이자와 원금은 매달 13일에 지급하며(단, 13일이 공휴일 및 주말 경우 그 다음날로 지급), 4년 후 1억 5천만 원+이자의 분할 상환이 완납이 되면, 매도인은 5일 이내에 근저당 설정을 해지한다.

2) 피고 B은 2018. 6. 14.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8,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, D으로부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. 6. 15. 접수 제3244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받았다.

라.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등

1) 피고 B은 2018. 9. 18.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제7의 ②항에 따라 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계약'라고 한다).

2) D은 2018. 9. 18. 피고 B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,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6,800만 원으로, 채권자를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다.

마. D의 매매대금 지급

D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8. 7.부터 같은 해 9.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각 3,125,000원 합계 9,375,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고, 2018. 10.부터 2019. 2.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312만 5,000원 합계 15,625,000원을 피고 C에게 각 지급하였다.

바.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B의 재산 상태

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,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D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원금 143,750,000원(= 매매대금 150,000,000원 - D이 2018. 7월 및 같은 해 8월 각 변제한 각 3,125,000원 합계 6,50,000원)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채권과, 시가 173,186,000원 상당의 충북 단양군 I 대 496㎡와 그 지상 일반목구조 금속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39.25㎡ 및 일반목구조 너와지붕 2층 단독주택, 시가 402,040원 상당의 충북 단양군 J 도로 152㎡ 중 2분의 1 지분 등 합계

347,338,240원 상당의 적극재산이 있었고, 소외 은행에 대한 223,750,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, K은행에 대한 99,274,771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,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96,431,164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619,455,935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, 갑 제11 내지 1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갑 제7호증의 1 내지 3, 갑 제9호증, 갑 제12, 13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서귀포시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,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, B에 대한 각 청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475,087원(= 대위변제 원금 99,375,738원 + 대지급금 1,099,349원)과 그중 대위변제 원금 99,375,73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. 12. 28.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 변경 전날인 2019. 3. 31.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

가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

1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18. 9. 18. 무렵에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, 그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B 사이에는 구상금 및 그에 관한 연대보증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가까운

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, 실제로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가량 후에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및 그에 관한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각 성립되었으므로,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회사가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 B의 자력,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점, 피고 B와 피고 C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, 그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나.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

1) 피고 C은 이에 대하여, 자신은 피고 B의 지인으로서 그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228,275,965원 상당을 대여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,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외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.

2) 살피건대,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 C이 2017. 6. 19.부터 2018. 3. 19.까지 사이에 E, L은행, M은행 등에 수차례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, 피고 C의 예금거래내역인 위 각 증거에 의하면, 그 '거래기록사항'에 그 수취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17. 12. 4.자 150만 원 및 2018. 3. 19.자 200만 원 뿐이고, 나머지는 '법인이체', 'A차입', 'A대체', '가평온도기', '가평인력', '가평규조인력', 'N급여', 'O일급', 'A이자', '중국자재', '가평자재'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B이 아닌 피고 회사에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 회사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거래처 또는 그 직원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거나, 'P', 'Q사장규조', 'R' 등 피고 C이나 피고 B과 어떤 관계로 그 송금이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므로,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나아가, 설령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송금거래 내역이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,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, 그

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),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C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결국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

1) 원상회복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(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),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,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는 합계 223,750,000원 상당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,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피고 B 소유의 충북 단양군 I 대 496㎡와 그 지상 일반목구조 금속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39.25㎡ 및 일반목구조 너와지붕 2층 단독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단11010호로 청구금액을 296,431,164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, 2018. 10. 15.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 외에도 소외 은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.

2) 원상회복의 방법 가) 피고 B 및 피고 C에게 변제된 9,000,000원 부분
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, 채권자는 원상회복의

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(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),
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다23468, 23475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D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에 따라 2018. 7.부터 같은 해 9.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각 3,125,000원 합계 9,375,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고, 2018. 10.부터 2019. 2.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3,125,000원 합계 15,625,000원을 피고 C에게 각 지급하여 이를 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,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변제받은 15,625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) 나머지 1억 2,500만 원 부분

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추심을 하기 전이라면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, 당해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형태가 된다(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D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9. 6. 4.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중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잔액은 1억 2,500만 원 상당이고, 피고 C이 그 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,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억 2,500만 원 부분의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, 위 채권의 채무자인 D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강균

별지

청구취지 제1항에서 "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,475,087원 및 그중 99,375,738원에 대하여 2018. 12. 28.부터 2019. 3. 31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"라고 기재하였으나,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은 2019. 2. 1.로서 연 1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 내에 포함되어 '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'의 기간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, 이를 "피고 주식회사 A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,475,087원 및 그중 99,375,738원에 대하여 2018. 12. 28.부터 2019. 3. 31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"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행하여 판단한다.